

“함께해요! 복지세정”



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

- 안녕하십니까?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- 귀사가 2022년도 중에 근로자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 **지급명세서**를 아래 제출 기한까지 **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출대상

- 이자, 배당, 근로,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

제출기한

-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기타소득(종교인소득 제외), 비거주자의 사업 등 지급명세서(발행자 보고용) | **2월 28일까지**
- 근로소득, 퇴직소득, 사업소득(봉사료 포함), 사업소득(연말정산용), 연금계좌, 종교인소득(연말정산용) 지급명세서, 의료비지급명세서 | **3월 10일까지**

※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지급명세서 내용이 잘못 작성된 경우 지급금액의 1%를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제출방법

- 홈택스, 손택스(모바일) 또는 서면 제출

* 자세한 내용은 뒷면 참조

세 무 서 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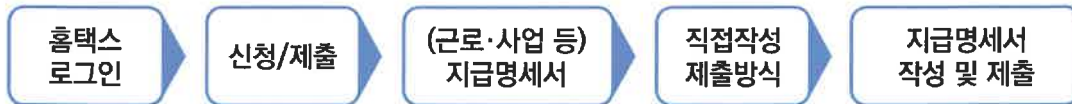
홈택스 등을 이용한 지급명세서 제출 방법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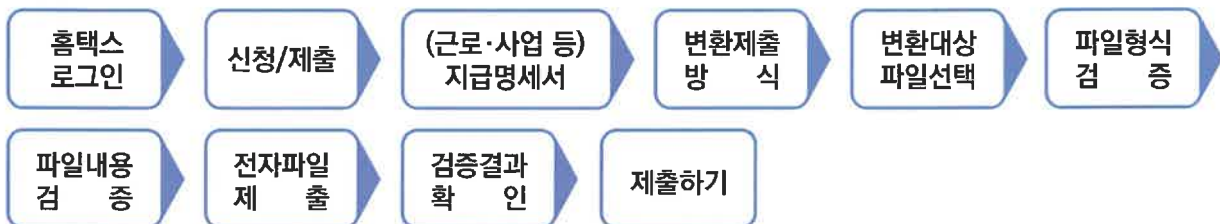
01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>)를 이용한 제출



직접 작성 제출방식



변환 제출방식 {상용(자가)프로그램* 이용}



* 상용(자가)프로그램은 반드시 홈택스 하단의 [자료실]-[20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]을 참고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홈택스를 이용한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

- * 제출 기간 내 **동일 자료를 여러 번 전송한 경우에는 최종 전송한 자료만을 유효한 자료**로 인정합니다.
- * **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**의 경우 각 소득별 소득의 종류, 조세특례 등 코드, 세율, 세액 등 입력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(예 : 비영업대금의 이익 → 소득의 종류 22. 조세특례 등 코드 NN, 세율 25% 정확히 입력)
- * ‘**검증결과확인**’에서 오류가 있어 확인할 사항으로 분류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정해야 제출됩니다.

02 손택스(모바일)를 이용한 제출



직접 작성 제출방식

